



송파구의회
Songpa District Council

미래도시 선진송파, 함께하는 열린의회

심사보고서

의안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만화·웹툰 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의안번호	제440호
심사일자	2026. 6. 12.(금)



위원장 손병화 (인)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만화·웹툰 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440
------	-----

2026년 6월 12일
행정교육위원장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발의자: 2026. 5. 29. 장원만·이혜숙 의원
- 나. 회부일자: 2026. 6. 1.
- 다. 상정일자: 2026. 6. 12. 제332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 설명의 요지 (장원만 의원)

가. 제안이유

- 만화·웹툰은 단순한 문화 향유 분야를 넘어 창작, 제작, 유통, 지식재산 (IP) 활용 및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고부가가치 콘텐츠산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정책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송파구 또한 청년층과 지식기반 산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화·웹툰 콘텐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만화·웹툰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진흥계획 수립, 창작공간 및 기반시설 확충, 전문인력 양성, 창작·제작 및 창업 지원, 관련 기관·단체·기업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콘텐츠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상권 및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관련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규정(안 제4조)
-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5조의2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 제3조의2
「지방자치법」 제117조
-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 부서협의: 관계 부서 합의 완료(문화예술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선주)

-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송파구의 여건에 맞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진흥을 통해 송파구 관내의 웹툰 창작자, 스타트업 및 관련 기업을 육성하고, 구민들에게 만화·웹툰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문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용어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송파구 만화·웹툰 콘텐츠산업 관련 진흥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에서 만화·웹툰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창작·제작 활성화 및 창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교육, 관련 행사 개최 등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안 제6조에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안 제8조는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음.
- 본 제정안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지방자치법」 등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 보고드립니다.

4. 질의 및 답변

【질의】 박종현 위원

- 해당 조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현황은?

【답변】 장원만 의원

- 광역 10곳, 기초 6곳에서 조례를 제정·시행 중임.

【질의】 장종례 위원

- 안 제6조에서 창작자 개인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는?

【답변】 장원만 의원

- 만화·웹툰은 개인의 역할이 매우 큰 분야이므로, 개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개인과 관련 업종 간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질의】 김광철 위원

- 안 제5조제2호 기업유치 및 거점 조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한 선언만으로는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보이는데, 현재 거점 조성을 위한 검토 및 재정적 기반에 대한 설명 요구

【답변】 김은주 문화예술과장님

- 조례 제정 초기에는 구 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대규모 지원은 지양할 예정이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존 문화 인프라시설을 이용하거나 공모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외부재원을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음.

【질의】 김영심 위원

- 공유공간 지원에 대하여 설명 요구

【답변】 장원만 의원

-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는 창작활동을 하고,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실제 운영은 송파구 예산과 여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질의】 손병화 위원

- 조례에 지원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 장원만 의원

- 관내에 관련 회사가 있거나, 송파구에 살면서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분이 지원 대상임.

【질의】 박성희 위원

- 조례 제정 준비하면서 부서와 조례에 따른 예산 관련 논의를 했는지?

【답변】 김은주 문화예술과장님

-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보자고 말씀하셨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 후 단계적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하겠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